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221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22169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105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지은, 문성식, 임지혜, 장현주, 이승훈, 정기섭

피고, 피항소인 A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1. 28.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1058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채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채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B는"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는"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8행 이하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소유 부동산	부동산 (충남 논산 I 외)	659,046,000	감정평가액
J	0		
적극재산	J	11,324,360	사해행위 전 예금잔액
예금	J	40,695	
J	117,661,080		
소계		788,072,135	
소극재산	조세채무	소득세 등	2,631,291,280
근저당채무	소유 부동산 근저당채무	398,110,817	대출계좌 잔액
소계		3,029,402,097	
순자산		△2,241,329,962	
사해행위		▲150,000,000	

소유 부동산	부동산 (충남 논산 1 외)	659,046,000	감정평가액
채무초과		▲2,391,329,962	

-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의 "소외 A"을 "소외 K"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9.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나10359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항소심'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1. 6. 15. E의 L조합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을 조회한 때부터 이 사건 금원의 존재를 알았고, 전소 피고 등이 이 사건 전소에서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E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B가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E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준비서면이 2021. 1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을 알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2. 1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처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87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를 비롯한 전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전소 피고들이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E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B가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E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피고와 E의 금융거래명세조회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위 서면 및 서증이 같은 달 2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수익자가(E가 아닌) 피고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된 2022. 9. 21.경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다. 결국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1. 6. 15.경 E에 대한 L조합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이 E의 L조합, M저축은행, N조합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는 사실까지만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이 E에게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과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E라는 점을 인식하고 2021. 8. 30.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021. 11. 17.자 준비서면 및 서증을 제출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준비서면 및 서증을 통해 원고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금원이 E에게 입금되었다가 1년 후인 2020. 8. 18.경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한바, B에게서 인출되어 E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이 약 1년 후 E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중국적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중국적 귀속자가 피고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상대방이 모두 사실로 인식해야 하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금원이 최초 E에게 입금된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로서는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에도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E라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중국적 귀속자인 피고에게 지급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가 이 사건 금원을 2019. 8. 16. E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E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에 피고가 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룬다.
-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과거 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B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가 B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고, 대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 및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307,545,480원(체납액 포함)인 반면, B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금원은 150,000,000원에 불과한바, 피고와 B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일수

판사설승원

판사윤지숙